

1995. 12. .

光州廣域市西區議會報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議 會 運 營 委 員 會

光州廣域市西區議會報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1995 年 12 月
議會運營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發議日字 : 1995年 12月 19日
- 나. 發議者 : 西區議會 金永俊 議員外 5人
- 다. 回附日字 : 1995年 12月 20日
- 라. 上程日字 : 1995年 12月 26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(95年 12月 26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金永俊 議員)

가. 提案事由

- 구의회보 편집위원과 상임위원의 직무를 구분하고 효율적인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광고게재시 광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主要骨子

- 구의회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함.

- 상임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원고의 수정·교정업무를 담당토록 함.
- 5인이내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함
-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봄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朴 鍾 根)

-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편집위원과 상임위원의 업무 구분을 명확하도록 하고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집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

4. 質疑 및 答辯要旨書 : 생략

5. 檢討 要旨 : 없음

6. 審査 結果 : 수정안 의결

7. 少數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

광주광역시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시서구의회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중 “추천한 상임위원이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.”를 “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둔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상임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원고의 수정·교정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 1(실무소위원회)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이내로 하되 의회대변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작성 및 광고업무등을 담당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광고)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 이경우 광고를 의뢰한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

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의 1(실무소위원회) 제2항중 “5인이내로 하되 의회대변인은”을 “6인이내로 하되 부의장, 각상임위원장, 의회대변인, 전문위원 1인은”으로 한다.

안 제13조(광고) 관련【별표】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보편찬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편집업무를 담당한다.</p>	<p>제6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추천하 는 상임위원 1인을 둔다.</p>	
<p>제7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상임위원은 의회보를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·조사·연구·편집 및 심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	<p>제7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상임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원고의 수정·교정 업무를 수행한다.</p>	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9조(회의) ①(생 략) ②(생 략) ③<u>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.</u></p>	<p>제7조의 1(실무소위원회) ①<u>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<u>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하되 의회대변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u></p> <p>③<u>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④<u>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작성 및 광고업무등을 담당한다.</u></p> <p>제9조(회의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<u>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②<u>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하되 부의장, 각상임위원장, 의회대변인,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3조(광고)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광고)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 이경우 광고를 의뢰한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	

<개정안>

【별 표】

광 고 료 기 준

구 분	흑 백	칼 라	흑백요금 기준액
표 지 면 4.5단 (16cm×23cm=368cm ²)	원 472,000	원 708,000	1단 1cm 4,500원 (1cm ² 당 1285원)
기 타 면 4.5단 (16cm×23cm=368cm ²)	420,000	630,000	1단 1cm 4,000원 (1cm ² 당 1142원)

※ 칼라 요금은 흑백요금에 50% 가산

<수정안>

【별 표】

광 고 료 기 준

구 분	흑 백	칼 라	흑백요금 기준액
표 지 면 4.5단 (12cm×23cm=276cm ²)	원 354,000	원 531,000	1단 1cm 4,500원 (1cm ² 당 1285원)
기 타 면 4.5단 (12cm×23cm=276cm ²)	315,000	472,500	1단 1cm 4,000원 (1cm ² 당 1142원)

※ 칼라 요금은 흑백요금에 50% 가산